

금고지정 및 운영규정

제정 2024.7.8. 규정 제185호

개정 2025.9.8. 규정 제20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금고 지정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금고”란 여수시도시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소관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(이하 “금융기관”이라 한다) 중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
2. “금고지정”이란 공단의 금고업무를 담당하도록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금고약정”이란 공단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(이하 “지정금고”라 한다)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의사를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금고지정 방법) ① 이사장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·평가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

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당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9. 8.>

1. 시 구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
2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

3. 여수시 지정금고를 공단의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

③ 지정된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.

제4조(금고지정 참여요건)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
2. 여수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

제5조(금고지정 평가기준)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
2. 공단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
3.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

4. 금고업무 관리능력
5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6조(금고지정심의위원회) ① 이사장은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평가하기 위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결정에 관한 사항
2.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·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제3항제1호의 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
1. 대학교수, 회계사, 세무사, 변호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
2. 시 관계 공무원
3. 공단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

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.

-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.
- ⑦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참석 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과 회의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임기 종료 후에도 그러하다.
- ⑧ 위원회에 참석한 공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금고의 지정절차) ① 이사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·심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금융기관 심사표(이하 “심사표”라 한다)와 별지 제2호서식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.

④ 이사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평가·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

제8조(금융기관 제안서 제출)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지정 이후에도 금고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9조(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) ① 이사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지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, 각종 법령·조례·규정의 준수 의무, 지급금 및 수입금의 송금과 이체, 일시차입 및 기채, 배상 및 변상책임, 비용부담 및 수수료, 약정해지, 약정조문해석,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약정의 해지) ① 이사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금고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중도해지 및 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금고운용 보고) ① 금고는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별로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상·하반기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수입 총액, 그 밖에 금고 운영 및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지정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부칙 <제185호, 2024. 7. 8.>

이 규정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호, 2025. 9. 8.>

이 규정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5조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비 고
총 계		100	
1.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 계	27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8	
	- 국외 평가기관	(4)	
	- 국내 평가기관	(4)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19	
	- 총자본비율(안정성)	(6)	
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(6)		
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(5)		
- 유동성커버리지비율(유동성)	(2)		
	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금융감독기관의 경 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면 만점		
2. 공단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소 계	20	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(7)	
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(6)	
	다. 공단 대출금리	(4)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(3)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소 계	21	
	가. 관내지점현황 및 이용 편리성	(8)	
	나. 공단 수입금 수납처리 능력	(6)	
	다. 공단 수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7)	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소 계	25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6)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8)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(8)	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(3)	
5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 업 추진능력	소 계	7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	(5)	
	나. 공단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	(2)	

금융기관 심사표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금융기관별 점수			비 고
			○○ 은행	○○ 은행	○○ 은행	
	계	100			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 계	27			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8				
	- 국외 평가기관	(4)				
	- 국내 평가기관	(4)			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19				
	- 총자본비율(안정성)	(6)				
	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(6)				
	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(5)				
	- 유동성커버리지비율(유동성)	(2)				
2. 공단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소 계	20				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(7)				
	나. 공금예금 예치금리	(6)				
	다. 공단 대출금리	(4)			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(3)			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소 계	21				
	가. 관내지점현황 및 이용 편리성	(8)				
	나. 공단 수입금 수납처리 능력	(6)				
	다. 공단 수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7)			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소 계	25			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6)			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8)			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(8)				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(3)				
5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	소 계	7			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	(5)				
	나. 공단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	(2)				

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

금융기관명 :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득점 합계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 계	27							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8								
	- 국외 평가기관	(4)								
	- 국내 평가기관	(4)							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19								
	- 총자본비율(안정성)	(6)								
	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(6)								
	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(5)								
- 유동성커버리지비율(유동성)	(2)									
2 공단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소 계	20								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(7)								
	나. 공금예금 예치금리	(6)								
	다. 공단 대출금리	(4)							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(3)							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소 계	21								
	가. 관내지점현황 및 이용 편리성	(8)								
	나. 공단 수입금 수납처리 능력	(6)								
	다. 공단 수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7)							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소 계	25							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6)							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8)							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(8)								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(3)								
5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	소 계	7							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	(5)								
	나. 공단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	(2)								

여수시도시관리공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:

(인)

